

-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견인업체 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-  
**위·수탁 관리운영 연장계약서**



**강 남 구**



-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견인업체 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-

# 위·수탁 관리운영 연장계약서

「도로교통법」에 근거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 및 제18조를 근거로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, 견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강남구청장(이하 '위탁자'라 한다)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(이하 '수탁자'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(연장)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계약은 '위탁자'가 관리, 운영하고 있는 "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 및 관리 업무"와 "견인 대행업체 관리보조 업무"를 '수탁자'가 수탁하여 「공익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구민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한다」는 목표로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관리 대상 지역)** 관리 대상 지역은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로 한다.

**제3조(위탁의 범위)** ① '위탁자'는 관리 대상 지역 도로의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 및 견인 대행업체 관리보조 업무를 '수탁자'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관리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.

1.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, 단속자료 입력, 의견 진술 접수 및 심의 처리 등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관리 지원 및 보조업무
2. 견인된 차량 보관소 운영, 강남구 지정 견인 대행업체 관리보조 업무 및 장기 미반환 차량 매각

※ 단, 행정처분 및 견인 대행업체 지정의 경우는 제외

가. '수탁자'는 불법(부정) 주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·반환·관리 및 견인료(보관료 포함) 징수 등 견인된 차량 보관소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나. '수탁자'는 견인된 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장기 미반환 차량을 관련 법규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.

다. 장기 미반환 차량 등에 대한 매각 후 대금은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국세징수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라. '수탁자'는 장기 미반환 차량을 매각하였을 경우 관련 현황을 '위탁자'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마. 장기 미반환 차량의 매각(절차)은 「국세징수법」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.

바. '위탁자'는 장기 미반환 차량의 공매에 대한 필요한 서식의 직인 인영 날인에 협조한다.

3. 불법(부정) 주정차 관리 지원에 필요한 인력 관리 보조 및 장비 관리

4.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 관련 및 견인 대행업체 관리보조 업무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 보상 등 민원사항 처리

5.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, 송달 업무 및 납기 내 수납 정리 보고

6.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 업무 협조에 의한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보조

7. 주차민원 콜센터 운영

② '수탁자'는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일체의 시설물 및 장비를 설치 목적 외에 사용하지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③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 관련 업무 및 견인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보조업무를 위하여 단속 활동과 민원 사항 접수 처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"주차관리부"에서 처리하고 '위탁자'의 주관 하에 시행하는 구청, 동주민센터 등과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보조 업무에 관하여 소관(주무)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 체제로 운영한다.

**제4조(계약 기간)** ① 위·수탁 관리운영 계약 기간은 2020.01.01.~2022.12.31.로 연장 계약한다.

② 위·수탁 관리운영 계약 기간에 대하여 '위탁자' 또는 '수탁자'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 및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**제5조(근무 시간)** ①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 관리보조 업무는 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'위탁자'는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'수탁자'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6조(운영 방법 등)** '수탁자'는 수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계획(규정)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'수탁자'가 정하는 운영 계획(규정)은 「도로교통법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, 「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불법(부정) 주정차 단속 활동, 단속자료 입력 관리, 자체 견인보관소 운영 등 주차단속 관련 관리 지원 및 보조 업무 전반
2. 의견 진술 접수 및 심의 처리, 민원 응대 및 처리 절차 등 관리 지원·보조 업무 전반
3. 각종 피해보상 민원 중재(주차단속, 견인파손 등) 처리 지원

**제7조(주차관리부 운영)** ① '수탁자'는 주차관리부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.

1. 기능
  - 불법(부정) 주정차 지역 주정차 예방 및 지도(단속)보조 등
  - 불법(부정) 주정차 지역 관리 운영 관련 각종 민원 사항 종합 접수 처리 관리 지원
  - 기타 주차관리부 운영에 관한 사항
2. 관리체계
  - 주차관리부의 책임자(주차관리부장) 지휘, 감독 하에 임무 부여 및 처리
  - 주차관리부 책임자는 공단 인사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3. 운영
  -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체제 운영
  - 단속공무원은 민원 책임관리 및 구역 지정 단속
  - 구청장 명의 표시 단속 보조 및 지원업무는 주차관리부의 책임자가 처리한다.

4. 민원 처리

- 모든 민원 종합접수 및 당일 처리 원칙
- 민원 처리 소관(주무)부서 간 유기적 협조 및 준수, 지시 사항 이행

5. 주차관리부 직원의 근무 수칙 및 준수 사항

6. 직무 훈련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

7. 운영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등

② '위탁자'는 주차관리부 설치 운용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단속요원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, 단속 보조원 등 전담 인력)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'수탁자'는 '위탁자'의 근무 인력에 대해 근무 성적 및 태도에 상응한 상벌 사항을 '위탁자'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운영에 따른 규정은 방침에 따라 정한다.

**제8조(대행사업비)** ① 대행사업비는 '수탁자'가 '위탁자'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서 '수탁자'의 요구에 따라 '위탁자'가 통상운영비를 감안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착오단속(견인, 과태료) 피해 보상금은 강남구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'위탁자'는 '수탁자'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'위탁자'가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한다.

**제9조(보고 등)** '수탁자'는 '위탁자'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수지 분석 상황 및 정산 사항을 분기별로 '위탁자'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'위탁자'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**제10조(준수사항)** ① '수탁자'는 대상 지역 불법 주정차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 등 '위탁자'의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'수탁자'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.

③ '수탁자'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'위탁자'의 승인을 얻은 후 대행 업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1조(양도 · 양여 금지)** '수탁자'는 대상 불법(부정) 추정차 단속 관련 보조 업무 및 견인 대행업체 관리보조 업무를 직접 관리·운영 하여야 하며, '위탁자'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· 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**제12조(지도감독)** '위탁자'는 '수탁자'에게 위탁사업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1. 위·수탁 관리계약 이행 사항 확인 감독
2. 운영수익금 세입 조치 이행 사항 감독
3. 불법(부정) 추정차 단속 관련 운영방법 업무지도 및 견인대행업체 관리 보조업무 지도
4. 불법(부정) 추정차 단속 관련 운영 실태 등 각종 자료 제출 명령
5.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

**제13조(교육 등)** '위탁자'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사항이 있을 때에는 '수탁자'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자료 또는 서면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

1. 도로교통법, 조례 등 관련 법규 제정, 개정, 변경, 폐지 사항
2. 불법 추정차 관리·운영 계획(방침) 수립, 변경, 폐지 사항
3.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사항

**제14조(관리운영 책임)** '수탁자'는 '수탁자'의 책임 하에 수탁사업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하며, 수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'수탁자'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 민·형사상 문제(사건)에 대하여는 '수탁자'가 처리한다.

**제15조(해지권의 유보)** ① '위탁자'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'수탁자'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'위탁자'와 '수탁자'가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였을 때
2. '위탁자'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
3.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, 폐지로 계약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
4. 천재지변, 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
5. '수탁자'가 관계 법령, 조례와 계약사항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'수탁자'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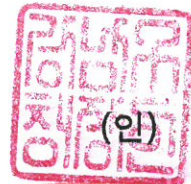
**제16조(관계법령 적용 등)** '수탁자'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도로교통법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, 「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'위탁자'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17조(계약서 작성 등)** 이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'위탁자'와 '수탁자' 쌍방이 확인·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12. 30.

계약자 "위탁자"

강남구청장



"수탁자"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

